

#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01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년 5월 27일
- 라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두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, 시의회의 기금 심의 등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바, 조례를 계정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대외협력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
  - (기존)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  - (변경)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대외협력기금 국내·국제협력계정 분리로 인한 기금 명칭 변경  
- (기존)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→ (변경) 국제개발협력기금

다.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신규 조례 신설로 인해 기존 대외협력기금  
조례에서 국내협력계정 내용 삭제

- 목적(안 제1조) :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
-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(안 제2조) : 국내 타  
지방자치단체 범위 삭제,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→ 정의 변경
- 기금의 용도(안 제6조) : 국내협력계정의 용도 삭제
- 기금관리(안 제7조) :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관 삭제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 : 국내협력계정 기금  
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

라.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  
운용관 변경

- 기금관리(안 제7조) : 기금운용관(경제정책실장 → 글로벌도시정책관)  
변경 및 분임기금운용관(국제협력과장 → 국제협력담당관) 변경

마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, 위촉직 위원 구분

- 위원회의 구성(안 제9조) :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 
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국장을 명시

바. 국내·국제협력계정 조례 분리로 인한 ‘계정별’ 문구 삭제  
(안 제5조~12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 :  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4. 11. ~ 5. 1.) 결과: 의견있음(일부반영)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 가. 전부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대외협력기금이 ‘국내협력계정’ 과 ‘국제협력계정’ 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례로 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협력계정을 ‘국제개발협력기금’ 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출됨.

### 나. 대외협력기금 이원화 배경 및 각 계정별 운용 현황

- 서울시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와 「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함(2005.12.29.).
- 이후 국내 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례 개정(2007.10.01.)을 통해 당초 국제협력기금의 명칭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그 아래 국제협력계정과 국내협력계정을 각각 두게 됨(2008.01.01.).
- 당시 동일 기금을 국내와 국제계정으로 운영 이원화한 것은 대외 기관과의 협력증진이라는 설치 목적의 유사성은 있으나, 사업 대상이 국내 타 지자체와 외국지방정부로 차이가 있었으므로 국제협력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각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신설하게 된 것임.

- 그리고 동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,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과 재해 구호경비 등의 용도로 운용되고<sup>1)</sup>,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등을 위한 용도로 운용되고 있음<sup>2)</sup>.
- 현재 ‘국내계정’의 총 조성 규모는 28억 1천 1백만원으로,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을 비롯한 5개 고유목적사업에 약 20억 5천 8백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고, 5월 현재 24.5%가 집행됨.

### < 2024년 국내협력계정 사업집행 현황 >

(2024.5.31. 기준, 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집행률(%)
합 계	2,058	504	24.5
1.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	300	210	70.0
2.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	100	10.0
3.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	250	175	70.0
4. 랜선 나눔 캠퍼스	473	10	2.1
5.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	35	9	25.7

- 또한 ‘국제계정’의 총 조성액은 69억 8천 7백만원으로,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운영,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등 10개 고유사업에 48억 1천 7백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여, 5월 현재까지 16.9%가 집행됨.

1) 서울시 조직개편(2022년 8월)에 따라 국제협력계정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됨.  
2) 서울시 행정국 대외협력과 소관

## < 2024년 국제협력계정 사업집행 현황 >

(2024.5.31. 기준, 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집행률(%)
합 계	4,817	815	16.91
1.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	959	239	24.92
2.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	507	12	2.36
3.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	77	0	0
4.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시정책 최고위과정	265	145	54.71
5.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	600	0	0
6.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	255	242	94.9
7.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	249	174	69.87
8.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	1,500	0	0
9.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	400	0	0
10. 기금관리비	5	3	60

### 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‘국내협력계정’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‘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’을 ‘국제개발협력기금’으로 변경하면서 조례명도 「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로 개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(안 제1조~제12조).
- 동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 중 국제협력계정 관련 사항을 발췌하여 재정비하는 등 계정 분리에 목적이 있는 만큼 내용상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 안 제7조는 새로 적용되는 서울시 조직개편(2024.7.1.시행예정)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관을 현행 경제정책실장에서 ‘글로벌도시정책관’ 으로 변경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을 국제협력과장에서 ‘국제협력담당관’ 으로 변경하였음.
- 또한 안 제11조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일정 및 안건을 통보하는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, 이는 현행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을 준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성찬	02-2180-8061